

【이용계약에 관한 사항】

1.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(보호자)와 장기요양기관과 이 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,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 요양인정서 만료일로 한다.

2. 계약 목적은 정신적 ·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데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.

3. 계약 내용은 계약당사자, 계약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, 비용, 비 급여 대상,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시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.

【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】

1. 장기요양 급여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%를 본인이 부담하고, 85%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.

2.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(보호자)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.

3.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.

[등급별 월 한도액]

등 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(치매특별)
월 한도액(원)	2,306,400	2,083,400	1,485,700	1,370,600	1,177,000

[방문요양] (단위 : 원)

분 류	30분	60분	90분	120분	150분	180분	210분	240분
방문요양	16,940	24,580	33,120	42,160	49,160	55,350	61,670	68,030
본인부담금(15%)	2,541	3,687	4,968	6,324	7,374	8,303	9,251	10,205
본인부담금(9%)	1,525	2,212	2,981	3,794	4,424	4,982	5,550	6,123
본인부담금(6%)	1,016	1,475	1,987	2,530	2,950	3,321	3,700	4,082

※30분미만은 비용 산정을 하지 아니함(심야, 일요일, 유급휴일등 50%가산함)

분 류	차량이용(차량 내 목욕)	차량이용(가정 내 목욕)	차량 미 이용
방문목욕	86,480	77,970	48,690
본인부담금(15%)	12,972	11,695	7,304
본인부담금(9%)	7,783	7,017	4,382
본인부담금(6%)	5,189	4,678	2,921

[방문목욕] (단위 :원)

【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】

1. 본 기관의 기관장은 수급자가 본 기관과 계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.

2.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) 본 기관에서 받게 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를 제공받을 권리
- 2) 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, 선택할 권리
- 3)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
- 4)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

- 5)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
 - 6)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, 처리 받을 권리
3.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- 1)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의무
 - 2) 본 기관의 직원 및 본 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수급자에 대한 존중의 의무
 - 3) 본 기관과 체결된 재정적인 의무
 - 4)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 의무

【계약의 해제】

수급자(보호자)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대상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(요양원입소, 사망) 서비스가 종결되며, 이용료(본인부담금)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.형사상의 문제를 일으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【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】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1.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.
2.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
3.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“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서”를 재 작성 한다.